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, 그 밖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 이상
가.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	법 제23조제1항	500	1,000	1,000

나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 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3조제2 항 제1호	20	40	60
다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23조제2 항제2호	25	50	50
라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한 경우	법 제23조제2 항제2호	50	75	100
마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3조제2 항제3호	50	75	100

비고

1. 위 표의 가목의 경우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2. 위 표의 다목 및 라목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